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85
----------	-------

발의연월일 : 2025. 8. 21.

발 의 자 : 조정훈·서천호·김용태
김대식·정성국·박성민
김종양·박충권·최수진
김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대학의 미래 인재 양성 역량 강화와 교육·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로서,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

대학 등록금 동결 유도과 양질의 고등교육 제공을 위하여 국가 재정 투입의 필요성이 커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현행법의 일몰 기한을 연장 또는 폐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단순히 일몰 기한 연장 또는 폐지에 앞서 고등교육 재정에 대한 중·장기적인 구조개선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되, 교육부장관은 전년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

로써 중·장기적인 고등교육재정의 운영 방향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신설 및 법률 제19202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국회에 대한 보고) ① 교육부장관은 전년도 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
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환경 변화와 재정 여건 전망
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법률 제19202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중 “2025년”을 “2028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11조(국회에 대한 보고) ① 교육부장관은 전년도 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u>1.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 분석 및 성과관리 계획</u> <u>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환경 변화와 재정 여건 전망</u> <u>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u>
법률 제19202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u>2025년 12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	법률 제19202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u>2028년</u>-----.